

# 일본의 사진기 및 관련제품 수출호조

## 91년도 수출실적 분석

일본 대장성이 밝힌바에 의하면 금년도 1/4분기 중 Camera 및 동 관련제품의 수출이 90년 동기대비 팔복할만한 성장을 보였다. 기종별로 보면

### 1. 35mm Lens-Shutter Cameras

91년도 1/4분기중 일본의 LS Camera 수출은 수량기준으로 볼 때 5,335천대를 수출하여 작년 동기 대비 40.8%의 성장을 보였고 금액기준으로 볼 때도 976백만㌦에 달하여 작년 대비 16.8%의

성장을 보였다.

이들 제품의 수출국들을 보면 미국에는 작년동기대비 33.3%가 늘어난 1,323 천대를 수출하였고 이어 독일에 806천대, 불란서에 608천대, 인도네시아에 465천대, 말레이지아에 246천대를 수출하였다. 특기할만한 점은 독일은 수량상으로는 23.7%가 증가한 806천대를 수입하였으나 금액은 0.2%에 그쳐 저가형 LS Camera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불란서는 수량은 11.1% 증가에 불과하

91. 1/4 일본의 국별수출 현황

품목별	구분	단위	수출현황			국별수출				
			91. 1/4	90. 1/4	증감(%)	1위	2위	3위	4위	5위
LS	대수	천대	5,335	3,790	40.8	(@) 1,323 (33.3)	(@) 806 (23.7)	(@) 608 (11.1)	(@) 465 (280)	(@) 246 (2,960)
	금액	백만㌦	34,976	29,930	16.8	10,478 (17.7)	8,807 (0.2)	1,593 (24.1)	1,030 (260)	1,050 (900)
SLR	대수	천대	771	—	11.9	(@) 225 (26.0)	(@) 198 (0.3)	(@) 78 (59.6)	(@) 33 (16.2)	(@) 29 (11.9)
	금액	백만㌦	22,181	—	4.6	7,328 (38.8)	5,085 (-16.7)	2,156 (34.4)	1,030 (-9.4)	931 (17.6)
110mm	대수	천대	0.6	—	—	—	—	—	—	—
	금액	백만㌦	16	—	—	—	—	—	—	—
Instant	대수	천대	7	3	250	—	—	—	—	—
	금액	백만㌦	366	159	230	—	—	—	—	—
교환렌즈	개수	천개	3,151	—	-14	(@) 1,019 (53.2)	(@) 489 (-67.6)	(@) 386 (40.8)	(@) 325 (-4.5)	(@) 199 (-15.3)
	금액	백만㌦	15,326	—	-1.3	326 (69.1)	1,658 (16.7)	344 (200)	4,325 (-1.7)	2,713 (-18.5)
cam - corder	대수	천대	2,086	—	65.2	(@) 807 (59.6)	(@) 339 (51.1)	(@) 130 (290)	(@) 120 (68.5)	(@) 107 (47.5)
	금액	백만㌦	174,000	—	47.3	59,260 (38.5)	29,453 (36.9)	11,191 (260)	11,063 (48.0)	10,365 (40.0)

① ② 국별 수출( )내는 전년대비 증감율(%)

③ ④ : 미국, ⑤ : 독일, ⑥ : 불란서, ⑦ : 인도네시아 ⑧ : 말레이지아, ⑨ : 홍콩, ⑩ : 네델란드,  
⑪ : 대만, ⑫ : 영국.

Camcorder  
수출도  
팔목할만한  
것이어서 작년  
동기대비  
수량기준으로는  
65.2%증가한  
2,080천대가  
수출되었고  
금액기준으로는  
174,000백만₩  
상당의  
수출실적을 올려  
각종 Camera  
수출액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수출을 하였으나  
금년도 년간  
수출은  
800만대로  
추정하고 있다.

나 금액기준으로는 24.1%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고가형의 LS Camera를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수입국 중 4, 5위에 오르게 된 것은 일본의 현지 공장 조립용 제품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2. 35mm SLR Cammersas

일본의 SLR Cammera 수출도 작년 동기대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대수기준으로는 90년 1/4 분기대비 11.9%가 증가한 771천대를 수출하였고 금액 기준으로도 4.6%가 증가한 22,181 백만₩을 수출하였다.

국별 수출현황을 보면 독일이 미국을 제치고 225천대를 수입, SLR Camera를 가장 많이 수입하였고 다음이 미국, 홍콩, 네델란드, 불란서 순이다.

독일이 90년 동기대비 26%가 증가한 225천대를 수입한 대신 미국은 수량으로 보면 0.3%증가한 198천대를 수입하였고 금액기준으로 보면 16.7%가 감소하여 일본의 대미수출 가격인하 또는 미국의 저가형 SLR 수입 경향을 엿볼 수 있겠다.

### 3. Color Video Cameras

Camcorder의 수출도 팔목할만한 것 이어서 작년 동기대비 수량기준으로는 65.2%증가한 2,080천대가 수출되었고 금액기준으로는 174,000백만₩ 상당의 수출실적을 올려 각종 Camera 수출액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수출을 하였으며 금년도 년간 수출은 800만대로 추정하고 있다.

국별 수출현황을 보면 역시 미국이 1 위로서 90년 동기 대비 수량기준 59.6%

가 증가한 807천대를 수출하였고 독일이 55.1%증가한 339천대를 수출하였으며 이어 네델란드, 불란서, 영국 순으로 수출하였다.

### 4. 교환렌즈

SLR Camera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교환렌즈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14%가 감소한 3,151천개를 판매하였으나 금액 기준으로 보면 겨우 1.3%정도 감소한 15,326백만₩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매뉴얼 렌즈보다 고가인 Auto Focus Lens 수량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1위인 홍콩을 제치고 말레이시아에 가장 많은 1,019천개를 수출하였지만 금액으로는 326백만₩에 불과한 것을 보면 Canon과 Minolta의 현지 조립용 제품으로 간주된다.

2위 수출국은 홍콩으로 작년 대비 67.6%감소한 489천대이며 다음이 대만, 미국 순이다.

### 5. 기타제품

기타제품용 110% Camera는 겨우 570대 수출에 불과하고 Instant Camera는 6,967대를 수출하였으나 작년동기 대비 2배로 증가하였고 중·대형 Camera는 16,384대를 수출, 40% 정도의 증가를 보였다.

또한 Eletronic Flash는 수량기준 1.7% 감소한 369천개를 수출하였으나 금액기준으로 보면 2,816백만₩으로 6.4%증가하였고 삼각대는 수량, 금액면에서 꾸준히 증가 94천개, 234백만₩. Filter는 140천타(Dozen), 쌍안경은 수량면에서 2.6% 감소한 629천개, 금액면에서는 11.1% 증가한 4,046백만₩을 기록하였다.

#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제도

최근의 수입개방화 시대에 따라 내수용소비재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원산지표시가 없는 상품이 수입되어 고가의 국산품으로 위장, 판매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적 수입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무역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입물품원산지 표시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대한무역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상공부고시 제91-22호  
대외무역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1991. 5.

상 공 부 장 관

## 대외무역관리규정중개정고시

대외무역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제7절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절 원산지

제3-7-1조(적용범위)이 절의 규정은 법 제18조, 제19조 및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7-2조(수출물품 원산지표시)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그 원산

지표시를 MADE IN KOREA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수출승인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표시의 변경을 승인하거나 표시를 면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3조(수입물품 원산지표시) (1)별표3-4에 게기한 수입물품 및 그 부장품은 당해물품에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별표3-4의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해물품의 포장, 용기 등에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당해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당해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3.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2.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형태와 방법으로 표시할 것
3.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할 것
4.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 (4) 수입후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전에 다른 물품과 결합되는 물품은 당해물품만이 그 원산지의 것임을 명확히 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7-4조(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면제)별표

3-4의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를 면제 할 수 있다.

1. 외화획득용원료로 수입하는 경우
2. 별표3-2에 해당하는 물품중 비영리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수입자의 자가소비,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4. 당해물품의 경제적가치에 비하여 원산지 표시비용이 과다한 경우
5. 기타 관세청장이 상공부장관이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7-5조(원산지표시의 확인) (1)별표3-4의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의 통관시 원산지표시여부에 대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세관장은 수출, 수입되는 물품이 제3-7-2조 내지 제3-7-4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의 표시·정정·말소 등 적절한 조치를 지시 할 수 있다.

제3-7-6조(수입물품의 원산지) (1)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산·가공 또는 제조를 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

1. 당해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

2. 당해물품이 2개국이상에 걸쳐 생산·가공·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당해물품으로서의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 행위를 최종적으로 행한 국가.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국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2. 당해국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당해국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
4. 당해국선박에 의하여 채포한 어획물, 기타 물품
5. 당해국에서 제조, 가공공정중에 발생한 물품
6. 당해국 또는 당해국의 선박에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

(3) 제1항 제2호에서 “실질적인 변화”라 함은 당해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6단위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별표3-5에서 별도로 정한 품목은 다음 각호를 실질적인 변화 및 원산지로 본다.

1. 제조단계를 구성하는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의 35%이상을 생산 또는 최초로 공급한 국가
2. 제1호의 국가가 없거나 2개국이상의 경우에는 주요부품을 생산한국가 또는 주요공정이 이루어진 국가

(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의

비율은 당해물품의 제조, 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누계가 당해물품의 수입가격(FOB가격기준)에서 점하는 비율로 한다.

제3-7-7조(원산지의 확인) (1) 법 제18조, 제19조 및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세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관계자료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관세청장은 제1항의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7-8조(협의 등) (1)이 절의 규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공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사안과 관련된 공무원, 전문가 등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사안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 무역업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별표 3-4] 및 [별표 3-5]를 별첨 1 및 별첨 2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 부칙

이 고시는 1991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3-4

#### 원산지 표지 대상 품목(광학기기분야)

H S	품 명
9005	쌍안경, 단안경 기타 광학식의 망원경과 이들의 장착구 및 기타의 천체관측용 기기와 이의 장착구(전파관측용의 기기를 제외한다)
9006	사진기(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8539호의 방전램프이외의 섬광기구
9009	사진복사기(광학기구를 갖춘 것 또는 밀착식의 것에 한 한다)와 열식 복사기
901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의 기기(감광성 반도체 재료에 회로 모형을 투영하는 기기를 포함하여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 한다)와 네가토스코우프 및 영사용 스크린
9011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 또는 마이크로 영사용의 것을 포함한다)
9012	광학현미경 이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

별표3-5

#### 특정수입물품의 원산지[광학기기분야]

H S	품 명	주요부품 또는 주요공정
9006 51 9000 53 9000	35mm 롤필름용의 사진기	· 셔터
9009 12 0000	전자식 보통용지 복사기	· 드럼